

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관리번호	
①사업자등록번호		②법인등록번호			
③법인명		④전화번호			
⑤대표자성명		⑥전자우편			
⑦소재지					
⑧업태		⑨종목		⑩주업종코드	
⑪사업연도		⑫수시부과기간			
⑬법 인 구 분		1. 내국 2. 외국 3. 외투(비율 %)		⑭조 정 구 분 1. 외부 2. 자기	
⑮종 류 별 구 분		중소기업 일반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기업 당기순이익 과세		⑯외 부 감 사 대 상 1. 여 2. 부	
영리법인		상 장 법 인 11 71 81 91		1. 정기신고	
코스닥 상장법인		21 72 82 92		2. 수정신고(가. 서면분석, 나. 기타)	
기 타 법 인		30 73 83 93		3. 기한후 신고	
비영리법인		60 74 84 94 50		4. 중도폐업신고	
⑰법 인 유 형 별 구 분		코드		⑱결 산 확 정 일	
⑲신고일				⑳납 부 일	
㉑신고기한 연장승인		1. 신청일		2. 연장기한	
구 분		여 부		구 분 여 부	
㉒주식변동		1 2		㉓장부전산화 1 2	
㉔사업연도의제		1 2		㉕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	
㉖동업기업의 출자자(동업자)		1 2		㉗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	
㉘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		1 2			

□ 법인별 세액의 계산

구 분	법 인 지 방 소 득 세			계
	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
㉙수 입 금 액	()			
㉚과 세 표 준				
㉛표 준 산 출 세 액				
㉜총 부 담 세 액				
㉝기 납 부 세 액				
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				
㉟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				
㊱납 부 할 총 세 액(㉝+㉞)				
㊲분 납 할 세 액	㊳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(㉟-㊱)			

□ 안분율의 계산

㊴본점/지점여부	1. 단일사업장 2.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. 지점	㊴특·광역시 주사업장 여부	1. 여 2. 부	
㊵해당사업장	명칭	소재지	연락처	
㊵안분율의 계산				
구분	종업원 수 (명)	건축물 연면적(㎡)		안분율 (소수점8자리)
		계	건물 기계장치 시설물	
법인전체				
시군구내				
비율(%)				

□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

㊶납세지별 산출세액		㊶납세지별 세액공제·감면액		
㊷납세지별 가산세액		㊷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		
합계	무(과소) 신고	납부지연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	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	기타
				㊸납세지별 기납부세액
				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
㊹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		㊹납세지별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		
㊺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		㊺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		
		㊻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(㊺-㊹)		
환급금 계좌 (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)		㊼금융기관명	㊼계좌번호	
			㊽예금주	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3, 제103조의24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법 인)

(인)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안내

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첨부 서류 (본점 신고서)	1. 재무상태표, (포괄)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 2. 현금흐름표(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) 3.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.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(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) 5.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① 사업자등록번호 ~ ⑩ 결산확정일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.
- ⑪ 신고기한 연장승인: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.
- ⑫ 주식변동 여부: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“여” 란에 “○” 표시를 합니다.
- ⑬ 장부전산화 여부: 국세청의 「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·보존하는 경우 “여” 란에 “○” 표시를 합니다.
- ⑭ 사업연도외제 여부: 해산·합병·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“여” 란에 “○” 표시를 합니다.
- ⑮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: “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환급신청서(별지 제43호의9서식 및 별지 제43호의10서식)”를 제출하는 경우 “여” 란에 “○” 표시를 합니다.
- ⑯ 동업기업의 출자자(동업자)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“여” 란에 “○” 표시를 합니다.
- 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“여” 란에 “○” 표시를 합니다.
- ⑱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“여” 란에 “○” 표시를 합니다.
- ⑲ 수입금액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.
- ⑳ 과세표준: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⑩란, ⑪란, ⑫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㉑ 표준산출세액: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3호의2서식)”의 ⑬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⑭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⑮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㉒ 총부담세액: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3호의2서식)”의 ⑯란, ⑰란 및 ⑱란을 합한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⑮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⑮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㉓ 기납부세액: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3호의2서식)”의 ⑲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⑲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⑲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㉔ 차감납부할세액: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3호의2서식)”의 ⑲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⑲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⑲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㉕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: 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3호의2서식)”의 ⑲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㉖ 분납할 세액: 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3호의2서식)”의 ⑲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㉗ 본점/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,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, 지점이면 3번에 ‘○’ 표시를 하며, ㉘ 특·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“여” 란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- ㉙ 해당사업장: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, 소재지, 연락처를 기재합니다.
- ㉚ 안분율의 계산
 - 종업원 수: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지방세법」 제74조제8호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.
 - 건축물연면적: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)의 연면적을 적습니다. 다만,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(수조·저유조·저장창고·저장조·송유관·송수관 및 송전철만 해당)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.
 - 안분율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(0 이상 1 이하)을 적습니다.

$$\left[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 수}} \right) + 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}} \right) \right] \div 2$$

·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 ㉛ 납세지별 산출세액: ㉑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㉚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㉜ 납세지별 세액공제·감면액: 납세지별 세액공제·감면액을 적습니다.
- ㉝ 납세지별 가산세액: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.
- ㉞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: “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(별지 제43호의3서식)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㉜ 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(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3호의2 서식 ⑮란의 금액)을 더하여 적습니다.
- ㉟ 납세지별 기납부세액
 - 특별징수납부세액: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.
 - 총부담세액 ≥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: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.
 - 총부담세액 <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
 -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: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.
 -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: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.
 -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: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.
- ㊱ 납세지별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: ㉞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㉚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㊲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: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
$$\text{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} = \text{과세표준} \times \text{표준세율} \times \text{안분율} \times \left(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} - 1}{\text{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}} \right)$$

- ㊳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: “㉛ 납세지별 산출세액 - ㉜ 납세지별 세액공제·감면액 + ㉝ 납세지별 가산세액 + ㉞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- ㉟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± ㊱ 납세지별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 ± ㊲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”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㊴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: ㉞ 분납할 세액에 ㉚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한금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㊴ 금융기관명 ~ ㊵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- 「법인세법」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